

전국 입양기관 리스트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대한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6길 21	02-552-7420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0번길 62	051-621-7003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보상로 906	053-756-1392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4	062-222-9349
동방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02-324-0862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 81, 304호	051-469-5586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478번길 8-7	032-502-2226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8, 2층	042-526-3129
	경기지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83번길 70	031-466-7569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02-331-7030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20-5	051-468-4576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59, 4층	053-756-0183
	충청지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329	042-586-1983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간석동) 홀트인천복지센터 3층	032-424-0145
성가정입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242	02-764-4741	
광주영아일시보호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6	062-222-1095	시도
꽃동네 천사의 집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40-29	043-879-0285	허가기관
제주국내입양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근내길 42	064-758-0845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관련 참고 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s://ncrc.or.kr/ncrc/main.do>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ncrc_kr



보건복지부 유튜브

https://www.youtube.com/@mohw_kr



입양정보공개청구 [「입양특례법」 제36조]



신청자격

- 「고아입양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및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입양인

* (만19세 이상) 직접 청구 가능/ (만19세 미만) 입양부모 동의 하에 청구 가능



공개대상 정보

구분	내용
입양인의 배경정보	-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 입양일자 및 입양사유, 입양당시 입양인 성명 - 입양 당시 친생부모 거주지역명(시·군·구) - 입양인의 입양 전 보호 시설, 또는 입양기관 명칭, 주소, 연락처 -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양정보
친생부모의 인적 정보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확인 후 공개 가능)

*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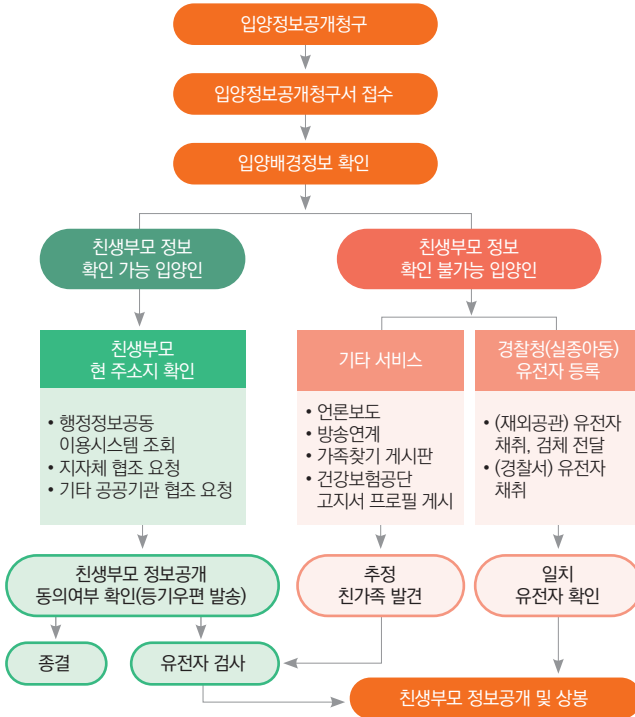
진행문의

기관명	이메일	연락처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	familysearch@ncrc.or.kr	02-6454-8500
대한사회복지회	swspas@kws.or.kr	02-567-8891/8851
동방사회복지회	postadoption@eastern.or.kr	02-3142-5821
성가정입양원	holy4741@hanmail.net	02-764-4741~3
한국사회봉사회	kssinc@kssinc.org	02-908-9191
홀트아동복지회	pasc@holt.or.kr	02-331-7019~20



진행절차

- 생애 최초 청구 : 입양기관 신청·접수
- 재청구 : 입양기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신청·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국내입양가정 지원 서비스 안내





입양부모교육



교육 진행

☑ 기본교육

- 교육대상 : 모든 예비입양부모는 입양 성립 전 12시간 이상 필수교육 이수 필요
- 진행절차 : 교육신청(입양기관) ▶ 교육일정 확인 및 교육수강
 - ▶ 교육수료증(교육확인서) 발급(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
 - ▶ 양친교육이수증명서 발급(입양기관) ▶ 가정법원에 제출

☑ 심화교육(선택)

- 교육대상 : 예비입양부모 중 만1세 이상의 아동(연장아) 또는 장애아동 입양 희망자, 친생자녀가 있거나 재입양하는 경우 및 난임가정 등 심화교육에 참여의사가 있거나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예비 입양부모
- 진행절차 : 교육신청(아동권리보장원*) ▶ 교육일정 확인 및 교육수강
 -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교육내용(강의 및 소그룹 토론)

구분	주요내용
기본교육	입양의 이해, 입양가정 지원 및 사후서비스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 (입양 말하기, 친생 가족 찾기, 아동학대예방 등)
	자녀 양육방법(아동발달의 이해, 긍정양육 등)
	사례발표(입양인 및 입양부모, 친생부모의 이해)
심화교육	만1세 이상 아동 입양가정 과정
	첫아이 입양 (난임)가정 과정 입양 말하기 과정



국내입양가정 지원 사항 〔「입양특례법」 제35조 등〕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입양아동 거주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입양축하금

☑ 지급금액

-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에 대해 1회 한정 200만원 지급

☑ 필요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입양 확정 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양육수당

☑ 지급기간

-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지급금액

- 매달 20일, 월 20만원

☑ 필요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입양사실 확인서(입양기관 발급, 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필요), 통장 사본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 지급기간

-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 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필요)

☑ 지급금액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매월 627천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등 그 외 지원대상 매월 551천원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진료·상담·재활·치료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비용)

☑ 지급대상 장애유형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당시에는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 필요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입양사실 확인서(입양기관 발급, 국내 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필요), 통장사본, 장애인 등록증, 의사소견서
 - * 의료비의 경우는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달 또는 분기별로 신청



입양아동 의료급여

* 관련 법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 지원기간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20세 생일이 도래하는 날 또는 졸업하는 날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까지 지원 (재학증명서 첨부 필요)

☑ 지원사항

- 1종 의료급여(입양아동 본인 한정)

☑ 필요서류

- 입양사실 확인서(입양기관 발급, 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필요),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 신청서

☑ 적용방식(선택가능)

구분	사후지원방식	사전지원방식
의료급여 수급권자 표기 여부	미표기	표기
병의원 등 자격확인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진료시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 비용청구, 지급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재정 우선 부담)	의료급여 적용 (의료급여 기금)
사후 비용정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기관부담금 내부 정산 (건강보험 종별가산을 적용)	비용정산 미발생
	입양아동 부모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환급(의료급여)	



입양가정 심리·정서 지원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입양아동	• 정서행동 조절, 투사검사, 문장완성 검사, HTP 검사, TCI검사 • 심리상담 지원 및 연계
입양부모	• 양부모 양육스트레스·양육유형·양육태도검사 • 심리상담 지원 및 연계, 부모교육 등

☑ 지원규모

- 1가정당 288만원 내외
 - * 입양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1인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

☑ 지원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모집 공고(www.ncrc.or.kr)를 통해 신청·접수(연2회)
 - * 상세 일정 변동 가능, 공지사항 참고



통합(자조)서비스

☑ 주요내용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일정자격을 갖춘 법인 및 단체가 수행하는 입양아동·가정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 예산 지원·관리

☑ 공모진행 절차

- 공모사업 시행 공고 및 접수(1월) → 사업 선정(1월)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수행 점검(2월~12월) → 사업결과 제출 및 평가(12월~다음 해 1월)
 - * 세부 수행 사업내역은 법안·단체별로 상이함.

